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기준 1.1.2 정의
- 제정일 : 2015년 5월 12일
- 최종 개정일 : 2026년 4월 30일
-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방문일 : 2026년 6월 24일)

기준 1.1.2 정의(Definitions used throughout the Code)

참고 1 본 문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Cth))에 따른 것으로 기준을 모아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를 구성한다. 또한, 섹션 1.1.1-3 을 참조한다.

참고 2 뉴질랜드에서 적용하는 본 규정의 조항은 식품법(Food Act 2014)(NZ)에 편입 또는 채택되어 반영된다. 섹션 1.1.1-3 을 참조한다.

1.1.2-1 명칭

본 기준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1.1.2 정의(Definitions used throughout the Code)이다.

참고 시행일:

본 기준의 시행일은 2016 년 3 월 1 일이며 이 날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1999 년 (Cth)) 섹션 92 에 따라 관보(Gazette)와 뉴질랜드 관보에 게재되고 발표되어 정식 시행일로 인정된다. 같은 법 섹션 93 도 함께 참조.

1.1.2-2 정의 - 일반

참고 식품에 대한 정의는 섹션 1.1.2-3 에 명시한다.

- (1) 서브섹션 (2)에 따라, 본 규정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FSANZ Act)에서 동시에 사용된 용어의 경우 상반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동 용어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
- (2) 적용법(application Act)에 따라 본 규정을 적용할 때, 본 규정과 적용법 동시에 사용한 용어의 경우 상반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용어는 적용법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

예 상반된 의도는 서브섹션 1.1.2-2 (3)의 **표시(label)**의 정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3) 상반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본 규정에서는 다음 정의를 적용한다.

GMP 승인 첨가물(*additive permitted at GMP*)은 1.1.2-11 조를 참조한다.

아그벳 화학물질(*Agvet chemicals*)은 농·수의화학자치령(Agvet Code)의 의미에 따라 농산물 또는 수의 화학제품을 의미한다.

참고 아그벳(Agvet) 규정은 *농수의화학규정법(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Code Act 1994)(Cth)*의 스케줄로 설정된 농수의화학규정(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Code)이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FSANZ Act) 서브섹션 4 (1)도 참조한다.

아미노산 함량 조정 식품(*amino acid modified food*)은 섹션 2.9.6-2 를 참조한다. *AS/NZS*는 호주표준협회(Standards Australia)에서 공표한 호주·뉴질랜드 공동 기준(Australia New Zealand Standard)을 의미한다.

적용법(*application Act*)은 *관할구역 내의 법 또는 명령으로, 이에 따라 본 규정 요건을 해당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AS는 호주표준협회에서 공표한 호주 기준(Australian Standard)을 의미한다.

진열 케이스(*assisted service display cabinet*)는 구매자의 요청으로 담당자가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밀폐 또는 반 밀폐형의 진열 케이스를 의미한다.

책임자(*authorised officer*)는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관련 적용법 조항 시행 또는 이를 포함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관할구역의 적용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거나 임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유효탄수화물(*available carbohydrate*)은 섹션 S11-3 에 따라 계산한 유효 탄수화물을 의미한다.

유효차감탄수화물(*available carbohydrate by difference*)은 섹션 S11-3 에 따라 공제법으로 계산한 유효차감탄수화물을 의미한다.

평균 열량(*average energy content*)은 섹션 S11-2 에 따라 계산한 평균 열량을 의미한다.

평균 함량(average quantity)은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가 제공한 식품에 포함된 물질의 평균 함량으로, 다음의 평균을 의미한다.

- (a) 1 회 분량 또는 기준량을 명시한 경우, 그러한 1 회 분량 또는 기준량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의 양, 또는
- (b) 그 외의 경우, 식품에 포함된 물질의 비율이며, 백분율로 표현된 양.

참고 섹션 1.1.1-6 을 참조한다.

구운 일자(baked-for date)는 빵과 관련된 용어로 다음을 의미한다.

- (a) 빵을 구운 시간이 정오 이전이면 빵을 실제로 구운 그날로,
- (b) 빵을 구운 시간이 정오 또는 정오 이후라면 그 다음 날을 구운 날짜로 할 수 있다.

구운 당일(baked-on date)은 빵과 관련된 용어로 빵을 구운 당일을 의미한다.

표시 부착(bear a label)은 판매용 식품은 규정된 종류 또는 규정된 함량을 포함하는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아래 중 하나로 나타내거나 해당 식품의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 (a) 종류 또는 함량이 적혀 있는 표시
- (b) 종류와 함량이 함께 적혀 있는 표시.

품질 유지기한(best-before date)은 판매용 식품에 관한 것으로, 식품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 식품의 온전한 판매 가능성 및 명시적, 묵시적으로 강조된 품질이 유지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 (a) 보관하는 동안 포장에 손상되지 않고
- (b) 기준 1.2.6 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보관 조건에 맞게 보관한다.

생물학적 활성 물질(biologically active substance)은 영양소 이외의 물질로 건강 효과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마커(biomarker)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파라미터로, 인체에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있는 경우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대량 화물 컨테이너(bulk cargo container):

- (a) 리프트 밴, 이동식 탱크, 선적용 컨테이너, 항공 화물 컨테이너나 다음의 기타 유사 구조의 운반 장비를 의미한다.
 - (i) 영구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용에 적합한 강도를 지닌다.
 - (ii) 즉각적인 재포장 없이도 한 가지 이상의 운송 방법으로 상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고
 - (iii) 즉각적 조작과 하나의 운송 방법에서 다른 운송 방법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장비가 부착되어 있으며
 - (iv) 채우거나 비우기 쉽도록 설계되었고
 - (v) 내부 용량이 1 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 (b) 컨테이너와 함께 수입되고 해당 컨테이너에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일반 부착물과 장비를 포함하며,
- (c) 차량, 일반적인 포장용 상자, 운송용 나무상자, 상자나 기타 포장에 사용되는 유사한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업체 주소(business address)란 해당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도로 주소 또는 위치에 관한 설명이다.

탄수화물(carbohydrate)은 맥주 (섹션 1.1.2-3 참조)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유효 탄수화물이나 *유효차감탄수화물을 의미한다.

출장 요식업체(caterer)는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다루거나 제공하는 개인, 시설 또는 기관(예를 들어, 출장 요리 시설, 식당, 매점, 학교, 병원)을 의미한다.

세포 배양 식품(cell-cultured food)은 다음과 같은 원천에서 분리된 세포를 배양하여 얻은 식품을 의미한다: 가축; 가금류; 사냥감; 수산물(생선 포함); 전자의 난자 또는 배아.

특징적 성분(characterising component)—섹션 1.1.2-4 를 참조한다.

특징적 원료(characterising ingredient)—섹션 1.1.2-4 를 참조한다.

강조표시(claim)는 본 규정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진술, 표현, 디자인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영양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강조표시(claim requiring nutrition information)는 다음과 같다.

- (a) 다음을 의미한다.
 - (i) 영양 함량 강조표시; 또는
 - (ii) 건강 강조표시; 그리고
- (b)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i) 적용법에서 요구하는 표시,
 - (ii) 보증 광고,
 - (iii) *규정된 글루텐프리 음료 강조표시

코드(code) 또는 본 코드(this code)은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 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를 의미한다.

코드 번호(code number)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코드로 다음의 중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

- (a) 해당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스케줄 8의 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련 번호,
- (b)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숫자.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허용 색소(colouring permitted at GMP)—섹션 1.1.2-11를 참조한다.

색소의 최대 허용 기준(coloring permitted to a maximum level)—섹션 1.1.2-11를 참조한다.

분쇄(comminuted)는 토막 썰거나 잘게 썰거나 가는 것을 의미한다.

성분(component)은 식품의 원료와는 별개로, 식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예 탄산수소나트륨을 식품 생산 원료로 사용하여 요리를

하면 이산화 탄소와 소금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금은 식품의 성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복합 원료(*compound ingredient*) : 식품이 두 가지 이상의 원료로 구성되면 해당 원료는 **복합 원료**이다.

식이 섬유(*dietary fibre*)는 식물에서 식용 가능한 부분 또는 해당 부분의 추출물로부터 얻은 것 또는 합성 유사체를 의미하고, 이는 다음과 같다.

- (a)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장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발효되고
- (b) 다음의 이로운 생리적 효과 한 가지 이상을 촉진한다.
 - (i) 배변 활동
 - (ii)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 (iii) 혈당 조절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 (c) 중합반응 정도 2 이상의 다당류 또는 올리고당
- (d) 리그닌.

보증 광고(*endorsement*)는 보증 기관의 허가로 만들어진 영양 함량 강조표시 또는 건강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보증기관(*endorsing body*)은 다음과 같은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 (a) 영양 또는 건강 관련 목적이나 기능이 있고
- (b) *공급 업체에 보증광고를 하도록 허가한다.

안전추정적정 일일섭취량(*ESADDI*)은 안전하다고 추정하는 적정 일일 섭취량을 의미한다. 섹션 1.1.2—10 을 참조한다.

이물질 잔류허용 기준(*extraneous residue limit*) 또는 **ERL** 은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해당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에 대해 스케줄 21 에서 명시한 양을 의미한다.

지방(*fat*)은 기준 1.2.7 과 1.2.8, 스케줄 4 와 11 의 총지방량을 의미한다.

착향료(flavouring substance)는 본 규정에 따라 향미를 더해주는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식품(food)은 서브섹션 (2)를 참조한다(관련 적용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 다양한 적용법에서 각각 식품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모든 정의 규정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으며, 인간이 섭취하도록 만들었거나 제공한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식품법(Food Act)은 식품법 2014(NZ)를 의미한다.

식품첨가물(food additive)은 섹션 1.1.2-11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참조한다.

식품군(food group)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a) 빵(발효시킨 빵이나 발효시키지 않은 빵), 곡식, 밥, 파스타, 국수
- (b) 과일, 채소, 허브, 향신료 및 균류
- (c) 우유, 탈지유, 크림, 발효유, 요구르트, 치즈, 가공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분유, 농축 우유, 연유, 섹션 S17-4 에 명시된 곡물과 콩류로부터 만든 유제품 유사물질
- (d) 육류, 어류, 계란, 견과류, 씨앗, 말린 콩류
- (e) 버터, 식용유지, 식용유지 스프레드를 포함하는 지방.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을 의미한다.

FSANZ 법(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Cth))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을 의미한다.

기금 모금 행사(fund raising event)는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자선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갈락토올리고당(galacto-oligosaccharides)은 효소 작용으로 젖당에서 생산되는 물질의 혼합물로 2~8 개 사이의 당 단위로

구성되며, 이런 당 단위 중 하나는 최종 포도당이며 나머지 당류는 갈락토오스와 갈락토오스 2 개가 결합한 이당류이다.

일반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general level health claim*)는 높은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가 아닌 건강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일반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 표(*general level health claim table*)는 섹션 S4-5 에 대한 표를 의미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는 섹션 1.1.2-16 을 참조한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섹션 2.7.5-4 를 참조한다.

글루텐(*gluten*)은 밀, 호밀, 귀리, 보리, 트리티케일, 스펀트밀에 들어있는 주요 단백질로 만성 소화 장애와 포진성 피부염과 관련이 있다.

혈당지수(*GI, glycaemic index*)는 해당 식품 내에 존재하는 소화 가능한 탄수화물의 혈당 상승 능력을 공인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측정한 것이다.

GMP 또는 제조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은 식품첨가물과 식품의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 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의 관행을 의미한다:

- (a) 식품에 첨가된 물질의 양은 기대 효과를 내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 (b)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과 그 파생 물질의 양을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다.
 - (i) 제조, 가공, 패키징 과정에서 사용하여 식품의 *성분으로 남는 물질
 - (ii) 식품 자체의 물리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닌 물질
- (c) 물질의 준비와 취급은 식품 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한다.

식품 포장용 바구니(*Hamper*)는 장식이 된 바구니나 상자, 또는 용기로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 (a) 구별할 수 있는 식품을 별도로 1 가지 이상 담고 있고,
- (b) 장식 천, 유리, 접시와 같은 기타 물품을 포함할 수 있다.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는 식품이나 식품의 특성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술, 강조 또는 암시하는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참고 서브섹션 2.10.2-8 조 (3)을 참조한다.

건강 효과(health effect)는 아래의 효과 중 1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체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 (a) 생화학적 과정이나 결과
- (b) 생리적 과정이나 결과
- (c) 기능적 과정이나 결과
- (d) 성장 및 발달
- (e) 신체적 효능
- (f) 정신적 효능
- (g) 질병, 질환 또는 상태.

높은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high level health claim)는 *심각한 질환이나 심각한 질환의 *바이오 마커와 관련된 *건강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건강 강조표시표(high level health claim table)는 S4-4 조를 참조한다.

수입(import)은 다음과 같다.

- (a) 호주—뉴질랜드로부터 수입; 또는
- (b) 뉴질랜드—호주로부터 수입.

개별 분량 포장(individual portion pack)은 서브섹션 1.2.1-6 (3)을 참조한다.

개별 유닛(individual unit)은 다음의 용기를 의미한다.

- (a) 가장 안쪽 포장을 의미한다.
- (b) 부피 기준 1.15%의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담는다.

영아(*infant*)는 12 개월 미만의 아이를 의미한다.

내부 포장(*inner package*)은 특수의료용도 식품과 관련하여 다음 식품의 개별 포장을 의미한다.

- (a) 섹션 2.9.5-9 에 따라 표시가 표시된 다른 포장 내에 담아 판매하는 식품
- (b) 환자나 *담당 기관의 거주자에 대해 담당 기관이 판매하는 경우 외 일반 개별 판매용으로는 제작하지 않은 식품.

예 내부 포장의 예로는 완전하게 라벨 표시가 되어있는 소매 판매용 상자 내에 담은 분말 식품의 개별 분량 포장으로, 상자는 소매 판매가 가능하다.

내부 포장(*inner package*)은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식품의 개별 포장을 의미한다.

- (a) 기준 2.9.1 의 디비전 4 에 따라 라벨 표시가 된 다른 포장에 담겨 판매되는 식품; 및
- (b)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책임이 있는 기관*의 환자 또는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판매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식품

예 내부 포장의 예로는 완전하게 라벨 표시가 되어있는 소매 판매용 상자 내에 담은 분말 식품의 개별 분량 포장으로, 상자는 소매 판매가 가능하다.

회사 내 이동(*intra-company transfer*)은 섹션 1.2.1-18 를 참조한다.

이눌린형 프룩탄(*inulin-type fructans*)은 최종 α -D-(1→2) 글루코실-프룩토스(fructosyl-fructose)에 연결된 포도당 단위 여부와 관계없이 β -D-(2→1) 프룩토실-프룩토스를 가진 당류의 혼합을 의미한다.

방사선 조사(*irradiation*)는 식품에 이온화 방사선 작용을 가하는 것으로 측정 또는 검사 도구를 사용해 이온화 방사선 작용을 가하는 것을 제외하며 ‘방사능으로 처리하다(*irradiate*)’와 ‘방사능으로 처리된(*irradiated*)’은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관할구역(jurisdiction)은 호주의 주 또는 특별자치구,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연방을 의미한다.

표시(label)은 판매용 식품과 관련하여 글로 쓴 태그, 브랜드, 상표, 문구 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하는 표시나 디자인, 또는 설명의 형태이다.

- (a) 해당 식품 또는 식품 포장에 부착하거나
- (b) 식품과 함께 구매자에게 제공되거나
- (c) 식품 판매 시, 식품과 연계하여 진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labeling):

- (a) 판매용 식품과 관련해서 식품과 함께 표시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한다.
- (b) 특정 내용이 식품에 표시될 것이 요구된다 함은 적어도 하나의 표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리스테리시달 공정(listericidal process)은 식품 내 **리스테리아균 미생물(Listeria monocytogenes)**을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공정을 의미한다.

로트(lot)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가 밝히는 식품의 준비량, 또는 식품이 판매를 위해 포장 기타를 통해 분리되는 양으로,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 조건에 놓여 있어야 하며,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 (a) 특정 준비 단위 또는 포장 단위로부터 분리,
- (b) 일반적으로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간에 분리되는 양을 의미한다.

로트 ID(lot identification)는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는 숫자 또는 기타 정보를 의미한다.

- (a) 식품이 포장 또는 준비되는 시설
- (b) 해당 식품이 부분으로 들어간 *로트.

최대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또는 **MRL** 은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농약, 동물용 의약품)에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식품 내 Agvet 화학물질을 나타내는 스케줄 20 에 명시된 양을

의미한다.

의료 기관(*medical institution*)은 1.1.2-7 조 참조.

NPSC를 충족하다(*meet the nutrient profiling scoring criterion*)는 섹션 S4-6 표 1 열에 기술한 식품의 *영양 프로파일링 점수가 해당 표의 2 열에 있는 식품 점수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불포화지방산(*monounsaturated fatty acids*)은 시스형(*cis-*) 불포화지방산(*cis-monounsaturated fatty acid*)의 총합을 의미한다.

비전통 식품(*non-traditional food*)은 섹션 1.1.2-8 를 참조한다.

신규 DNA(*novel DNA*)는 섹션 1.1.2-17 을 참조한다.

신소재 식품(*novel food*)은 섹션 1.1.2-8 를 참조한다.

신규 단백질(*novel protein*)은 신규 DNA 에 의해 암호화된 단백질을 의미한다.

NPSC(*nutrient profiling scoring criterion*)는 영양 프로파일링 점수 기준(섹션 S4-6 참조)을 의미한다.

영양 함량 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는 섹션 1.1.2-9 를 참조한다.

참고 2.10.2-8 조 (3)을 참조한다.

영양정보표(*nutrition information panel*)는 기준 1.2.8 에 따라 식품의 포장에 붙은 표시에 포함하도록 요구되는 영양정보표를 의미한다.

영양 프로파일링 점수(*nutrient profiling score*)는 섹션 1.2.7-25 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최종 점수를 의미한다.

영양 물질(*nutritive substance*)은 영양물질로 사용에 관한 섹션 1.1.2-12 를 참조한다.

NZS(*New Zealand Standard*)는 뉴질랜드 기준청(Standards New Zealand)에서 발행한 뉴질랜드 기준을 의미한다.

일일섭취량(one-day quantity)은 운동선수를 위한 조제 건강 보조식품과 관련하여 표시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서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의 양을 의미한다.

참조 카페인 조제 음료와 관련한 일일섭취량의 의미는 서브섹션 2.6.4-5 (5)를 참조한다.

포장(package)

- (a) 판매용 식품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거나 덮거나 밀폐하거나 담거나 포장하는 용기나 포장지를 의미하고
- (b) 1 개 이상의 포장에 담겨 운반 또는 판매 또는 운반 및 판매의 의도가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각 포장을 포함하며,
- (c) 다음은 제외한다.
 - (i) *벌크 화물 컨테이너
 - (ii) 화물 운반대의 겉 포장
 - (iii) 식품의 표시를 가리지 않는 운송용 상자 또는 포장
 - (iv) 운반 차량
 - (v) 자동판매기
 - (vi) 식품 포장용 바구니
 - (vii) 교도소, 병원, *의료 기관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덮개가 있는 접시, 컵, 쟁반, 기타 식품 용기 포함)
 - (viii) 기준 2.9.5 에 관해 *담당 기관이 환자 또는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덮개가 있는 접시, 컵, 쟁반 또는 기타 식품 용기.

허용된 착향료(permitted flavouring substance)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다음의 출판물 중에서 최소한 한 곳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
 - (i) 미국 향료 및 추출물 제조업체 협회(Flavou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에서 1960~2024 년(31 판) 사이에 발행한 착향료 물질에 관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목록

(ii) 화학적으로 정의된 착향료 물질, 유럽 위원회, 2000 년 11 월 호

(iii) 향료 목록을 채택한 2012 년 10 월 1 일 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No 872/2012 부록 I
[2012] OJ L267/1

(iv) 21 CFR § 172.515.

(b) 채소 또는 동물에서 비롯된 물질, 또는 이를 건조, 굽기, 발효 등의 전통적인 조리 방식에 의한 가공을 거친 후의 물질에 물리적, 미생물학적, 효소, 또는 화학적 가공을 거쳐 얻는 *향료 물질,

(c)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얻은 향료 물질로 (b)에서 명시한 것과 동일한 향료 물질.

식물스테롤, 식물스타놀 및 그 에스테르(*phytosterols, phytosterols and their esters*)에 관한 언급은 섹션 S3-24 의 식물스테롤, 식물스타놀 및 그 에스테르에 관한 규격(specification for phytosterols, phytostanols and their esters)을 충족하는 물질에 관한 부분이다.

다가 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s*)은 이중 결합으로 끊긴 시스(cis)- 시스(cis)-메틸렌(methylene)을 포함한 다가 불포화지방산의 총합을 의미한다.

임신 경고 표시(*pregnancy warning label*)은 임신 경고 그림문자 또는 임신 경고 표시를 의미한다.

임신 경고 마크 (*pregnancy warning mark*)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그림을 의미한다.

전체 국가에서

- (a) 임신 경고 픽토그램,
- (b) ‘임신 경고’ 표시 단어
- (c) ‘알코올은 아기에게 평생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라는 글.



임신 경고 픽토그램(pregnancy warning pictogram)은 줄 친 원안에 와인 잔을 들고 있는 임산부의 실루엣이 담긴 다음



픽토그램을 의미한다.

규정된 알코올음료(prescribed alcoholic beverage)는 다음과 같은 음료를 의미한다.

- (a) 부피 기준 1.15% 이상의 알코올이 든 음료
- (b) 다음 중 한쪽을 의미한다.
 - (i) 소매용으로 판매되거나
 - (ii) 추가로 처리, 포장, 표시 등을 거치지 않고 소매로 적합하게 판매되는 음료이다; 그리고
- (c) 다음 음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i) 소매 판매용으로 판매되는 음료
 - (ii) 구매자 앞에서 포장하는 음료.

규정된 음료(prescribed beverage)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표준 알코올음료; 또는
- (b) 부피 기준 알코올이 0.5% 이상인 음료.

규정 음료의 글루텐프리 강조표시(prescribed beverage gluten free claim)는 글루텐과 함께 기술어 ‘프리(free)’ 또는 해당 기술어의 유의어를 사용한 규정 음료의 글루텐과 관련하여 영양함량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지정된 명칭(prescribed name)은 특정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본 규정의 조항에서 해당 식품의 명칭으로 명시한 이름을 의미한다.

참고 기준 1.2.1 과 섹션 1.2.2-2 의 표시 조항에 따라 식품에 지정된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식품의 표시 표시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가공보조제(*processing aid*)는 섹션 1.1.2—13 가공보조제로 사용(*used as a processing aid*)을 참조한다.

식품의 특성(*property of food*)은 *요소(component), 원재료, 구성성분(constituent) 또는 기타 식품의 특징을 의미한다.

RDI(*recommended dietary intake*)는 권장 식이 섭취량을 의미하며 섹션 1.1.2—10 을 참조한다.

즉석섭취식품(*ready-to-eat food*)은 다음과 같은 식품을 의미한다.

- (a) 판매되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비되는 식품이면서
- (b) 섭취 이전에 *리스테리시달 공정을 거치지 않으며
- (c) 다음과 같은 상태가 아닌 식품을 의미한다.
 - (i) 상온 보관 식품
 - (ii) 생과일
 - (iii) 생채소
 - (iv) 껍질이 있는 견과류
 - (v) 살아있는 이매패류.

기준 식품(*reference food*)은 강조표시(claim)와 관련되며 다음을 의미한다:

- (a) 강조표시를 하는 식품과 동일한 종류이며, 추가로 가공, 조제, 재조제, 또는 변경하여 에너지 수치를 증감시키거나 강조표시 대상인 영양분의 양을 증감시키지 않는 식품 또는
- (b) 강조표시를 하는 식품과 동일 *식품군에 있는 식이 대체식품.

기준 수량(*reference quantity*)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섹션 S17—4 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 (i) 표에 명시된 해당 식품의 양
 - (ii) 사용 방법에 따라 희석 또는 환원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희석 또는 환원되었을 때, (i)에서 언급한 수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식품의 양

(b) 기타 식품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i) 정상적인 1 회 분량

(ii) 사용방법에 따라 희석, 환원, 건조, 준비가 필요한 식품의 경우, 희석, 환원, 건조, 준비가 되었을 때 정상적인 1 회 분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식품의 양

분비할 수 있는 칼슘(releasable calcium, Ca_R)은 20 분 동안 씹음을 씹었을 때 입 속으로 분비된 칼슘을 mg/g 으로 측정된 양을 의미하며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Ca_R = \frac{(Ca_o \times W_o) - (Ca_c \times W_c)}{W_o}$$

위 공식에서 각각의 기호는 다음을 의미한다.

Ca_o 씹음의 원래 칼슘 농도를 의미한다(mg/g).

W_o 씹음의 원래 중량을 의미한다(g).

Ca_c 20 분 동안 씹은 씹음의 잔류 칼슘을 의미한다(mg/g).

W_c 는 씹은 씹음의 중량을 의미한다(g).

관련 당국(relevant authority)은 해당 적용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의미한다.

필수 명칭(required name)은 특정 식품의 필수 명칭이란 표준 1.2.3 의 디비전 3 의 목적을 위해 해당 식품의 필수 명칭으로 섹션 1.2.3—5 로 공표한 명칭을 의미

담당 기관(responsible institution)은 환자 또는 거주자의 복지를 책임지고 식품을 제공하는 병원, 호스피스,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 교도소, 기숙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의미한다.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은 이중 결합을 포함하지 않는 지방산의 총량을 의미한다.

판매(sell)는 서브섹션 (2)를 참조한다(관련 적용법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 다양한 적용법에서 각각 판매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모든 정의 규정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다. 판매용 제품 또는 전시를 포함해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기타 맥락을 포함한다.

심각한 질병(serious disease)은 의료 전문가와 협의로 이루어지거나 의료 전문가의 감독에 따라 일반적으로 진단, 치료, 관리되는 질병, 질환, 상태를 의미한다.

1 회 제공량(serving)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준비했을 때 또는 섭취 전 더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때 정상적인 1 회 제공량을 의미한다. 식사 대용 조제식의 경우 한 끼 식사와 동일한 제공량을 의미한다.

글자 크기(size of type)는 글자나 숫자를 위부터 아래까지 측정한 크기를 의미한다.

소포장(small package)은 표면적이 100 cm² 미만인 포장을 의미한다.

SPC는 인큐베이션 72 시간, 온도 30°C 에서의 기준 플레이트 계수를 의미한다.

표준 음료(standard drink)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음료와 관련, 20°C에서 측정했을 때 10 g의 에탄올을 함유한 음료의 양을 의미한다.

표준 알코올음료(standardised alcoholic beverage)는 맥주, 브랜디, 사과주, 과일주, 과일주 가공품, 리큐르(liqueur), 벌꿀술, 배즙주, 증류주, 채소주, 채소주 가공품, 와인 또는 와인 가공품을 의미한다.

원료의 표시(statement of ingredients)는 섹션 1.2.4-2를 참조한다.

당류(sugars):

(a) 기준 1.2.7, 기준 1.2.8, 스케줄 4에서 단당류(D-알룰로스 제외)와 이당류를 의미한다.

(b) 그 외의 경우, 어떤 원료로부터 파생된 아래의 제품 중

하나를 의미한다:

- (i) 덱스트로스(dextrose), 과당, 자당, 젓당을 포함한 육탄당 단당류(hexose monosaccharides)와 이당류(disaccharides)
- (ii) 전분 가수 분해물(starch hydrolysate)
- (iii) 글루코스 시럽(glucose syrups),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기타 유사 제품
- (iv) 설탕 정제 과정에서 파생된 제품으로 황설탕이나 당밀 등도 포함된다.
- (v) 가루 설탕
- (vi) 전화당
- (vii) 과당 시럽

그러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 (i) 맥아 또는 맥아추출물
- (ii) 소르비톨(sorbitol), 만니톨(mannitol), 글리세롤(glycerol), 자일리톨(xylitol), 폴리덱스트로스(polydextrose), 이소맥아시럽(isomalt maltitol syrup), 에리트리톨(erythritol) 또는 락시톨(lactitol)

참고 설탕(Sugar)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섹션 1.1.2—3 를 참조한다.

공급업자(supplier)는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을 포장,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총 식물스테롤 함량(total plant sterol equivalents content)은 다음의 합을 의미한다:

- (a) 식물스테롤(phytosterols)
- (b) 식물스타놀(phytostanols)
- (c) 식물스테롤 에스테르(phytosterol esters) 및 식물스타놀 에스테르(phytostanol esters)를 가수분해한 후의 식물스테롤(phytosterols)과 식물스타놀(phytostanols)

트랜스 지방산(trans fatty acids)은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이 트랜스 배열(trans configuration)에 포함되는 불포화지방산(unsaturated fatty acid)의 총량을 의미한다.

운반용 외부포장(transportation outer)은 다음의 컨테이너 또는 포장 용기를 의미한다.

- (a) 운송과 유통을 목적으로 포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은 식품을 집어넣는다.
- (b) 소매 판매를 위해 식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포장을 제거하거나 식품의 구매자가 제거하지 않는다.

단위 수량(unit quantity)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고체, 혹은 반고체 식품의 경우는 100g
- (b) 음료와 또는 액체 식품의 경우는 100ml

소비기한(use-by date)은 판매용 식품의 경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될 때 건강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일자 이후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 (a) 해당 식품은 보관 기간에 포장 상태를 원래대로 유지해야 하며
- (b) 기준 1.2.6 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보관 조건에 맞춰 보관되어야 한다.

식품첨가물로 사용(used as a food additive)은 섹션 1.1.2-11 참조

영양물질로 사용(used as a nutritive substance)은 섹션 1.1.2-12 참조

가공보조제로 사용(used as a processing acid)은 섹션 1.1.2-13 참조

경고 문구(warning statement)는 판매용 식품의 경우, 식품의 특정 측면에 관해 다음의 조항에 명시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이다:

- (a) 섹션 1.2.3-3(로열젤리에 관한 경고 문구)

- (b) 섹션 2.6.3-4(카바에 관한 경고 문구)
- (c) 서브섹션 2.9.1-21(1) (영아용 조제 제품에 관한 경고 문구)
- (d) 패러그래프 2.9.2-7 (3) (c) 또는 패러그래프 2.9.2-8 (1) (b)(영아용 식품에 관한 경고 문구)
- (e) 서브패러그래프 2.9.4-4 (1) (a) (iii) 또는 2.9.4-4 (1) (a) (iv) (운동선수를 위한 식이 보충용 조제 식품)

1.1.2-3 정의—특정 식품

참고 비식품 용어에 대한 정의는 섹션 1.1.2-2 에 명시되어 있다.

- (1) 본 규정이 본 섹션에서 정의한 특정 식품에 대해 한 물질(비타민이나 무기질 포함)을 식품첨가물, 가공 보조제, 영양 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정의는 그러한 물질을 사용한 식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2) 본 규정에서 상반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아래의 정의가 적용된다:

조제 우유(*adjusted milk*)는 분유, 농축 우유, 연유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우유를 의미한다:

- (a) 분유, 농축 우유, 연유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유이며,
- (b) 기준 2.5.7 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성분이 추출되거나 추가 성분이 첨가된 것으로
- (c) 유청 단백질 대 카세인 비율이 원래의 우유와 동일한 우유

맥주(*beer*)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홉 열매 또는 홉 열매의 조제용 물질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며 발아된 또는 발아되지 않은 곡물 또는 둘 다의 액체 추출물을 효모로 발효시켜 만든 제품, 또는
- (b) 이에 생산 과정 중 다음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 (i) 곡물 제품 또는 다른 탄수화물 원료

- (ii) 설탕
- (iii) 소금
- (iv) 허브와 향신료

브랜디(*brandy*)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와인, 포도 또는 포도 제품의 발효 조제물질을 증류해서 얻은 증류주 또는
- (b) 생산 과정 중 다음의 첨가되는 증류주를 의미한다:
 - (i) 물
 - (ii) 당류
 - (iii) 꿀
 - (iv) 향신료
 - (v) 포도 주스
 - (vi) 포도 주스 농축액
 - (vii) 와인
 - (viii) 자두 주스

참고 참고 용어 브랜디는 기준 4.5.1 에서는 다르게 정의하였다.

빵(*bread*)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하나 이상의 곡물의 가루 또는 이를 굽게 빵은 것과 물로 만든 효모 반죽을 구운 식품 또는
- (b) 여기에 기타 식품이 첨가된 음식을 의미한다.

발효 탄산음료(*brewed soft drink*)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이다:

- (a) 물, 설탕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섞어 발효 과정을 거쳐 조제된 제품:
 - (i) 과일즙 또는 추출액
 - (ii) 채소즙 또는 추출액
- (b) 알코올 함량이 부피당 1.15% 이하인 식품.

버터(*butter*)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전적으로 우유에서 얻은 식품으로, 주로 유중수적형(water-in-oil)의 유탁질 형태로 우유로 만드는 제품 또는
- (b) 이에 아래 제품을 첨가한 식품을 의미한다:
 - (i) 물
 - (ii) 소금
 - (iii) 젖산 생성 미생물
 - (iv) 향미 생성 미생물

곡류 음료(cereal-based beverage)는 곡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음료를 의미한다.

영아용 곡류 가공품(cereal-based food for infant)은 곡물을 원료로 하지만 음료를 포함하지 않는 영아용 식품을 의미한다.

치즈(cheese)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아래의 과정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이용하여 얻은 고체 또는 반고체 유제품으로 숙성이나 코팅과 관계없다.
 - (i) 렌넷(rennet), 기타 적합한 응고제 작용으로 우유 또는 우유로부터 얻은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 응고 및 응고 결과물인 유청을 일부 걸러내는 과정.
 - (ii) 우유나 우유로부터 얻은 물질, 또는 둘 모두의 농축 또는 응고를 포함한 가공 기법으로 그 최종 제품이 서브패러그래프 (a) (i)에서 기술한 제품과 유사한 물리적, 화학적, 감각 수용성 특징을 가지게 되는 과정
- (b) 다음 원료가 치즈의 생산 과정에 첨가되는 제품:
 - (i) 물
 - (ii) 젖산 생성 미생물
 - (iii) 향미 생성 미생물
 - (iv) 젤라틴
 - (v) 전분
 - (vi) 식초

(vii) 소금

(viii) 기준 2.5.4 에 따라 첨가되는 톨유 식물스테롤
에스테르(tall oil phytosterol ester)

초콜릿(chocolate)은 다음을 특징으로 하는 과자류를 의미한다:

(a) 아래가 포함되어 있다

(i) 코코아콩 파생물

(ii) 코코아 버터나 유지방 외에 50g/kg 이하의 식용유지

(b) 최소 200g/kg 의 코코아콩 파생물의 조제물.

사과주(Cider)는 사과 또는 사과와 배 주스 또는 발효액으로 만든
과일주로 주스 또는 발효액 함량이 25%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코카 관목(coca bush)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코카 관목(*Eurythroxylum coca*) 또는

(b) 코카 관목(*Eurythroxylum coca*)에서 추출한 물질.

코코아(cocoa)는 소금이나 향신료 첨가와 관계없이 지방의
일부를 제거한 코코아 콩으로부터 얻은 분말 제품을 의미한다.

커피(coffee)는 커피콩을 볶거나 갈거나 혹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통해 조제한 제품을 의미한다.

연유(condensed milk)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우유 또는 조제 우유에서 물을 일부 제거하고 당류를 추가해
얻은 식품으로 소금 또는 물을 첨가할 수 있는 식품, 또는

(b) 기타 공정에서 얻은 동일한 성분의 식품을 의미한다.

크림(cream)은 탈지유에서 지방이 유화된 형태로 상대적으로
지방이 풍부한 유제품이며, 다음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 우유에서 분리하여 얻거나,

(b) 우유에서 분리하여 우유 또는 우유에서 얻은 제품을
첨가해서 얻을 수 있다.

**전체 혹은 조각별로 염지하고 건조시킨 살코기(cured and/or
dried meat flesh in whole cuts or pieces)**는 붙어있는 뼈도

포함한다.

디카페인 커피(*decaffeinated coffee*)는 대부분 카페인을 제거하여 만든 커피를 의미한다.

디카페인 차(*decaffeinated tea*)는 대부분 카페인을 제거하여 만든 차를 의미한다.

건조육(*dried meat*)은 건조한 고기를 의미하며 천천히 절인 건조육은 포함하지 않는다

분유(*dried milk*)는 우유 또는 조제우유에서 수분을 일부 제거해 얻은 분말 식품을 의미한다.

식용유지(*edible oil*)는 수생 식물과 수생 동물을 포함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지방산의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s), 디글리세라이드(diglycerides)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 유리 지방산(free fatty acid), 비비누화 성분(unsaponifiable constituents) 및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지, 왁스, 인지질(phosphatide)을 포함한 기타 지질이 미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식용유지 스프레드(*edible oil spread*)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식용유지와 물로 구성되고 이것이 유중수적형(water-in-oil) 유탁액 형태로 존재하는 식품, 또는
- (b) 이에 다음 첨가물이 가해지는 식품을 의미한다:
 - (i) 물
 - (ii) 식용 단백질
 - (iii) 소금
 - (iv) 젖산 생성 미생물
 - (v) 향미 생성 미생물
 - (vi) 유제품
 - (vii) 82 g/kg 이하의 총 식물스테롤에 해당하는 내용물

난제품(*egg product*)은 계란 내용물, 건조 계란, 액체로 된 계란 흰자와 액체로 된 계란 노른자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계란

내용물을 의미한다.

전해질 음료(electrolyte drink)는 60 분 이상의 지속적인 격렬한 신체 활동 중 또는 그 이후에 체액, 탄수화물, 전해질 및 전해질의 신속한 대체를 위해 조제된 음료를 의미한다.

전해질 음료 베이스(electrolyte drink base)는 전해질 음료를 만드는 고체 또는 액체를 의미한다.

농축 우유(evaporated milk)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열을 이용해 수분을 일부 제거해서 얻은 제품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첨가할 수 있다:

- (i) 소금
- (ii) 물 또는

(b) 또는 기타 공정에서 얻은 동일한 성분의 식품을 의미한다.

발효유(fermented milk)는 우유나 우유에서 얻은 제품을 발효시켜 얻은 유제품을 의미한다. 발효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 유제품이 응고되고 pH가 감소한다.

어류(fish)는 냉혈성 해양 척추동물과 해양 무척추동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패류는 포함하지만 양서류와 파충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말 제품(flour product)은 하나 이상의 가루나 굵게 빻은 가루 또는 곡류를 조리하거나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제품으로 빵을 제외한다.

가루(flours) 또는 **빻은 가루(meals)**는 곡류, 콩류, 기타 씨앗을 갈거나 빻은 제품을 의미한다.

성장기용 조제식(follow-on formula)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영아용 조제식을 의미한다.

- (a) 모유 대체품 또는 영아용 조제식 대응; 및
- (b) 생후 6개월부터의 영아를 위해 단계별로 다양화되는 식단에서 주요 액상 영양 공급원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것.

영아용 식품(food for infants):

- (a) 영아를 위한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하거나 영양 공급원을 대체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 (b) 다음과 같은 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i) 영아용 조제식
 - (ii) 식사 대용 조제식
 - (iii) 보충용 조제식
 - (iv) 가공하지 않은 과일과 채소.

특수의료용도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은 섹션 1.1.2-5 를 참조한다.

조제 음료(formulated beverage)는 다음과 같은 무탄산음료로 즉시 마실 수 있는 향료 첨가 음료를 의미한다.

- (a) 물을 원료로 하고
- (b) 비타민이나 무기질, 또는 둘 다 함유하며
- (c)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원료를 포함하고, 과일 함량은 240mL/L 이하이며,
 - (i) 과일주스
 - (ii) 과일 퓌레
 - (iii) 농축 과일주스
 - (iv) 농축 과일 퓌레
 - (v) *분쇄 과일
 - (vi) 오렌지 껍질 추출물
- (d) 당류 함량은 75g/L 이하이고,
- (e) 다음 물질은 포함하지 않고
 - (i) 이산화탄소 또는
 - (ii) 카페인
- (f) 다른 음료와 혼합하지 않는다.

카페인 조제 음료(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는 섹션

1.1.2-6 을 참조한다.

식사 대용 조제식(formulated meal replacement)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단일 식품 또는 여러 식품을 미리 포장한 식품을 의미한다.

- (a)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대체하도록 특수 조제한 식품으로 전체 식단을 대체하도록 조제한 것은 아니다.
- (b) 식사용 조제식에 해당한다.

식이 보충용 조제 식품(formulated supplementary food)은 개인의 에너지와 영양분 요건을 충족할 만큼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식단을 보조하도록 특수하게 조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매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유아용 식이 보충용 조제 식품(formulated supplementary food for young children)은 1~3 세의 유아를 위한 식이 보충용 조제 식품을 의미한다.

운동선수를 위한 식이 보충용 조제 식품(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은 운동선수가 특정 영양 목표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수 조제한 식품을 의미한다.

과일과 채소(fruit and vegetables)는 과일, 채소, 견과류, 향신료, 허브, 균류, 콩류, 씨앗 등을 의미한다.

참고 기준 1.2.7 과 1.2.8 에서는 과일과 채소 각각의 용어가 다르게 정의되며, 견과류, 향신료, 허브, 균류, 콩류, 씨앗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과일을 원료로 한 식품(fruit-based food)은 과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의미한다.

과일 음료(fruit drink)는 다음으로 조제한 제품을 의미한다.

- (a)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
 - (i) 과일주스
 - (ii) 과일 워레
 - (iii) 농축 과일주스

- (iv) 농축 과일 워터
- (v) *분쇄 과일
- (vi) 오렌지 껍질 추출물
- (b)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
 - (i) 물
 - (ii) 광천수
 - (iii) 당류.

과일주스(fruit juice)는 과일로 만든 주스를 의미한다.

과일주(fruit wine) 또는 **채소주(vegetable wine)**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다음과 같은 식품을 의미한다.
 - (i) 과일, 채소, 곡물, 또는 이러한 식품을 조합한 후 완전 발효 또는 부분 발효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 (ii) 와인과 와인 가공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b) 생산 중 다음과 같은 식품을 첨가할 수 있다.
 - (i) 과일즙과 과일즙 제품
 - (ii) 채소즙과 채소즙 제품
 - (iii) 당류
 - (iv) 꿀
 - (v) 향신료
 - (vi) 알코올
 - (vii) 물.

과일주 가공품(fruit wine product) 또는 **채소주**

가공품(vegetable wine product)은 과일주나 채소주, 또는 과일주와 채소주 두 가지 모두 700mL/L 이상 함유한 식품이며, 다른 식품과 함께 조제, 가공, 변형 또는 혼합하여 과일주나 채소주가 아닌 제품으로 만든 것을 지칭한다.

젤라틴(gelatine)은 동물의 피부, 뼈 및 기타 콜라겐 함유 성분이나 이들을 결합해서 조제한 단백질 제품을 의미한다.

꿀(honey)은 꽃의 꿀,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의 분비물,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에서 식물의 즙을 빨아 먹는 곤충이 배출한 분비물에서 꿀벌이 수집하여 자신의 특정 물질을 사용해 변형, 결합한 후 벌집에 저장하여 숙성하는 천연 당 물질을 의미한다.

아이스크림(ice cream)은 크림이나 유제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해서 기타의 식품을 넣어 달게 만든 냉동식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포가 들어가 있다.

아이싱(icing)은 코팅 용도로 설탕과 다른 식품을 혼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설탕 입히기, 플라스틱 아이싱, 아이싱 젤이 포함된다.

모조 식초(imitation vinegar)는 물과 아세트산을 혼합해 조제한 제품을 의미한다.

영아용 조제식(infant formula)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영아용 조제 식품이다.

- (a) 영아를 위한 모유 대체식; 및
- (b) 6 개월 미만 영아의 영양 요건을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

영아용 조제식 제품(infant formula product)은 우유 또는 기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식용 식품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으로, 영아의 나이에 따라 단독 또는 주요 액상 영양 공급원으로 기능하기에 영양학적으로 충분하다고 표현된 제품을 의미한다.

인스턴트커피(instant coffee)는 커피 수분 추출물로 만든 건조 가용성 고형분을 의미한다.

인스턴트 차(instant tea)는 차의 수분 추출을 통해 얻은 건조 가용성 고형분을 의미한다.

요오드 첨가 식염(iodised salt) 또는 **요오드 저염 식염 혼합물(iodised reduced sodium salt mixture)**은 식염 또는 저염 식염 혼합물로 때에 따라 다음이 첨가될 수 있다:

- (a) 요오드화칼륨(potassium iodide)
- (b) 요오드산칼륨(potassium iodate)

(c) 요오드화나트륨(sodium iodide)

(d) 요오드산나트륨(sodium iodate)

첨가 시 함량은 다음과 같다:

(e) 요오드 함량 25mg/kg 이상이며

(f) 요오드 65mg/kg 이하

잼(jam)

(a) 다음을 의미한다.

(i) 아래 중 하나 이상을 가공하여 조제한 식품을 이다.

(A) 과일

(B) 농축 과일 주스

(C) 과일 주스

(D) 과일의 수분 추출물

(ii) 이에 당류 또는 꿀을 함께 가공하여 만들었으며,

(b) 과일 설탕 조림을 포함하지만

(c) 마멀레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스(juice):

(a) 과육 유무와 관계없이 다음에서 얻은 액체 부분을 의미한다.

(i) 과일 또는 채소; 또는

(ii) 라임을 제외한 감귤류 과일의 경우 과일의 내과피만 해당, 그리고

(b) 주스를 농축하고 나중에 물에 재혼합한 제품도 포함한다.

혼합 주스(juice blend)는 두 가지 이상의 주스를 혼합해서 만든 주스를 의미한다. (하나 이상의 과일 주스와 하나 이상의 채소 주스를 혼합한 것도 포함한다.)

카바(kava)는 카바(*Piper methysticum*) 종의 식물을 의미한다.

카바 뿌리(kava root)는 제 43 차 합동 유엔식량농업기구 및 세계보건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회의(2020)에서 채택된 Regional Standard for Kava Products for use as a Beverage

When Mixed with Water (CXS 336R-2020)의 섹션 3.1 에서
명명된 Noble 품종 카바의 껍질이 벗겨진 뿌리 또는 뿌리줄기를
의미한다.

리큐르(*liqueur*)는 다른 식품으로 향미를 내거나 이를 혼합한
증류주로서 20°C 에서 측정할 때 알코올이 15%를 초과한다.

제조육(*manufactured meat*)은 육류가 660g/kg 이상 포함된
가공육을 의미한다.

마가린(*magarine*)은 식용 유지가 800g/kg 이상 포함된 식용유지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벌꿀 술(*Mead*)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꿀을 완전히 또는 부분 발효해서 만든 식품 또는
- (b) 그러한 제품에 생산 중 다음과 같은 첨가물이 가해진 식품을
의미한다:
 - (i) 과일주스와 과일주스 가공품
 - (ii) 채소주스와 채소주스 가공품
 - (iii) 당류
 - (iv) 꿀
 - (v) 향신료
 - (vi) 알코올
 - (vii) 물

육류(*meat*)

- (a) 야생 상태 이외의 환경에서 도축하면 아래 동물의 도체 전체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 (i) 버팔로, 낙타, 소, 사슴, 염소, 산토끼, 돼지, 가금류, 굴
토끼 또는 양;
 - (ii) 호주의 주, 특별자치구 또는 뉴질랜드의 법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기타 동물
- (b)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 (i) 어류

(ii) 조류알

(iii) 태아기 동물 또는 그 일부

살코기(meat flesh)는 동물의 골격 근육과 이에 붙어있는 다음의 부위로 구성된 육류를 의미한다:

- (a) 동물의 피부
- (b) 지방
- (c) 연결 조직
- (d) 신경
- (e) 피
- (f) 혈관
- (g) 가금류의 경우 피부 가죽

미트파이(meat pie)는 250g/kg 이상의 살코기를 함유한 파이를 의미한다.

우유(milk)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우유를 생산하는 동물의 유선에서 분비된 것으로 액체 그대로 음용 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용도로 1 회 이상의 착유를 통해 얻는다. 단, 초유는 제외한다.
- (b) 또는 여기에 식물스테롤, 식물스타놀 및 이들의 에스테르가 첨가된 제품

광천수(mineral water) 또는 **샘물(spring water)**은 지하수층에서 얻은 지하수로 자연 상태일 때 가용성 물질을 함유한다.

토종벌 꿀(Native bee honey)는 Tetragonula 또는 Austroplebeia 속의 호주 토종 침 없는 벌이 식물의 꽃에서 꿀을 채취한 후 생산한 천연의 단맛 물질을 의미한다.

비알코올음료(non-alcoholic beverage)를 다음과 같다.

- (a) 다음을 의미한다.
 - (i) 포장된 물, 또는
 - (ii) 물을 원료로 한 음료로, 알코올음료 외 다른 식품을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음료, 또는

(iii) 전해질 음료.

(b) 발효 탄산음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장(offal)

(a) 피, 뇌, 심장, 신장, 간, 췌장, 비장, 흉선, 혀, 양(tripe)을 포함한다.

(b) 생 살코기, 뼈와 골수는 제외한다.

땅콩버터(peanut butter)는 땅콩으로 만든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배즙주(perry)는 배 또는 배와 사과로 만들거나 주스로 만든 과일주로, 사과나 주스의 비율이 25% 이하이다.

가공 치즈(processed cheese)는 치즈와 유제품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유화염(emulsifying salts)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열하여 녹인 후 균일한 덩어리로 만든 것이다.

가공육(processed meat)은 단독으로 또는 기타 식품과 함께 뼈 분리, 얇게 썰기, 다지기, 분쇄 또는 냉동 이외의 가공 방법을 거친 식품을 의미한다.

사용이 금지된 식물(prohibited plant) 또는 **균류(fungus)**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스케줄 23 에 명시되어 있는 식물이나 균류, 또는

(b) 그런 식물 또는 균류 일부와 파생물, 또는

(c) 패러그래프 (a) 또는 (b)에 언급한 식물, 균류, 그 일부 또는 파생물에서 얻은 물질

생살구 알맹이(raw apricot kernels)는 살구나무 열매의 단단한 껍질에서 발견되는 견과류를 의미하며, 갈거나, 데치거나, 빵거나, 가르거나, 잘게 썰고, 부셔서 얻거나 알맹이 전체를 포함한다.

저염 식염 혼합물(reduced sodium salt mixture)은 다음의 식품을 의미한다:

(a)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과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의 혼합물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b) 나트륨(sodium) 함유량 200g/kg 이하

(c) 칼륨(potassium) 함유량 400g/kg 이하

사용이 제한된 식물(*restricted plant*) 또는 균류(*fungus*)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스케줄 24 에 나와있는 식물이나 균류, 또는

(b) 그런 식물이나 균류의 일부 또는 파생물, 또는

(c) 패러그래프 (a) 또는 (b)에 언급한 식물, 균류, 그 일부 또는 파생물에서 얻은 물질

소금(*salt*)은 주로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으로 구성된 결정질(crystalline product) 식품을 의미하며, 바다, 지하 암염 퇴적물 또는 천연 염수에서 얻는다.

소금 대체재(*salt substitute*)는 다음 식품을 의미한다.

(a) 소금을 대체하는 물질로 제조한 식품을 의미하고.

(b) 스케줄 15 에 있는 표의 항목 12 에 따라 소금 대체재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구성하며,

(c) 나트륨(sodium) 함량은 1.2g/kg 이하여야 한다.

소시지(*sausage*)는 다음 음식을 의미한다.

(a) 갈거나 다진 육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 육류로, 다른 재료와 섞을 수 있고, 개별 단위로 포장하거나 형태를 잡은 음식

(b) 육류 조각과 유사하게 형태를 만들거나 결합한 육류는 제외한다.

탈지유(*skim milk*)는 지방을 제거한 우유를 의미한다.

콩단백 영아용 조제식(*soy-based formula*)은 콩 단백질이 유일한 단백질원인 영아용 조제 제품을 의미한다.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제품(*special medical purpose product for infants*)은 다음의 영아용 조제 제품을 의미한다:

(a) 다음의 것으로 표현된다:

- (i) 의학적으로 결정된 영양소 요건이 있는 영아(일반 식품 또는 일반 식품의 특정 영양소를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및 배출하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경우 등)의 식이 관리를 위해 특별히 조제된 것; 및
- (ii)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는 의학적으로 식이 관리를 이룰 수 없는 경우 단독 또는 주요 액상 영양 공급원으로 적합한 것; 및
- (iii) 의학적으로 진단된 영아의 질환, 장애 또는 상태의 식이 관리를 위한 것; 및
- (b) 의학적 감독 하에 사용되도록 의도된다; 그리고
- (c) 일반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특수용도 식품(*special purpose food*)

- (a) 기준 2.9.6 에서 섹션 2.9.6-2 를 참조한다.
- (b)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식품을 의미한다.
 - (i) 영아용 조제식
 - (ii) 영아용 식품
 - (iii) 식사 대용 조제식
 - (iv) 식이 보충용 조제 식품
 - (v) 운동선수를 위한 조제 건강 보조식품
 - (vi) 특수의료용도 식품.

증류주(*spirit*)는 다음과 같이 제조하는 알코올음료를 의미한다.

- (a) 위스키, 브랜디, 럼주, 진, 보드카, 테킬라를 포함하여 음용 가능한 증류주로, 식품원에서 얻은 발효 리큐르를 증류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해당 증류주만의 향, 맛, 기타 특징을 담는다.
- (b) 또는 해당 음료 생산 중 다음을 첨가하여 증류한다.
 - (i) 물
 - (ii) 당류
 - (iii) 꿀

(iv) 향신료.

샘물(*spring water*)은 광천수의 정의를 참조한다.

설탕(*sugar*)이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의미한다.

- (a) 백설탕
- (b) 정제당
- (c) 아이싱 설탕(분말 설탕);
- (d) 막대 설탕;
- (e) 커피 설탕;
- (f) 원당.

카사바(*sweet cassava*)는 대극(*Euphorbiaceae*)과의 마니호트 에스쿠렌타 크렌츠(*Manihot esculenta Crantz*) 중 카사바 뿌리로 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의 함량이 50mg/kg 미만(생중량 기준)인 것을 의미한다.

참고 카사바는 마니옥(*manioc*), 만디오카(*mandioca*), 타피오카(*tapioca*), 아이핼(*aipim*), 유카(*yucca*) 등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졌다.

차(*tea*)는 하나 이상의 *Camelia sinensis* (L.) O. Kuntz 품종과 여러 품종의 잎이나 새싹으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채소주스(*vegetable juice*)는 채소로 만든 주스를 의미한다.

채소주(*vegetable wine*)는 과일주의 정의 참조.

채소주 가공품(*vegetable wine product*)은 과일주 가공품 정의를 참고한다.

식초(*vinegar*)는 알코올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적합한 식품의 초산이 발효하여 신맛이 나는 액체를 의미하며, 적절한 액체 혼합물을 포함한다.

초저열량식이(*very low energy diet*)는 과체중 및 비만의 식이 관리를 위해 특별히 조제되었으며 라벨의 사용법에 따라 섭취할 시 유일한 영양 공급원을 제공하는 특수의료용도 목적의 식품 범위를 의미한다

초저열량식품(very low energy food)은 *초저열량식이의 일부로 소비를 위해 생산된 특수의료용도 목적의 식품을 의미한다.

밀가루(wheat flour)에는 통밀 밀가루가 포함된다.

통곡물(wholegrain)은 완전한 곡물 또는 껍질을 제거하거나, 갈거나, 제분하거나, 분쇄하거나 조각낸 곡물 속에 배젖, 싹, 겨가 전곡(whole cereal)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비율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밀도 통곡물에 해당한다.

통밀(wholemeal)은 분쇄했지만, 전곡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비율로 곡물의 모든 성분이 함유한 제품을 의미한다.

와인(wine)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생포도를 전체 발효하거나 부분 발효한 제품, 또는 이러한 제품과 포도로만 만든 제품을 혼합한 것 또는
- (b) 이에 아래의 첨가물이 생산과정 중 더해진 식품을 의미한다.
 - (i) 포도주스와 포도주스 가공품
 - (ii) 당류
 - (iii) 브랜디나 기타 증류주
 - (iv) 허용된 식품첨가물이나 가공보조제를 혼합하는 공정에 필요한 물.

와인 가공품(wine product)은 700mL/L 이상의 와인을 함유한 식품이며, 조제, 가공, 강화 또는 기타 식품과의 혼합 과정을 거쳐 와인이 아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백설탕(white sugar)은 정제된 결정화 자당(crystallised sucrose)을 의미한다.

요구르트(yoghurt)는 발효 우유를 의미하며, 여기서 발효는 젖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1.1.2-4 식품의 특징적 성분 및 원료의 정의

- (1) 본 규정에서, 판매용 식품과 관련하여 다음 정의를 적용한다.

특징적 성분(characterising component)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의 *성분을 의미한다.

- (a) 해당 식품 명칭에서 언급한 성분, 또는
- (b) 보통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명칭과
관련한 성분, 또는
- (c) 해당 식품의 표시에서 단어, 사진 또는 그림으로 강조된 성분

특징적 원료(*characterising ingredient*)는 다음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원료의 범주를 의미한다.

- (a) 해당 식품 명칭에서 언급한 원료, 또는
- (b) 보통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명칭과
관련한 원료, 또는
- (c) 해당 식품의 표시에서 단어, 사진 또는 그림으로 강조한
원료.

(2) 단, 서브섹션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특징적 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a) 해당 식품에 향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원료나 원료 범주
- (b) 해당 식품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료나 원료 범주
- (c) 해당 식품 명칭에 언급은 되었지만, 함량 변화로 인하여 해당
식품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필수적이지 않거나 해당 식품과
기타 식품을 구별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과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원료나 원료 범주.

(3) 본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표시 표기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 섹션의 취지에 부합하는 강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5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정의

(1) 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수의료용도 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 (a) 다음 개인의 식이 관리를 위해 특별하게 제조한 식품
 - (i)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급여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으로

의학적으로 정한 특별 영양 요건이 있거나, 일반적인 식품이나 일반적인 식품의 특정 영양소를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또는 배설하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사람, 그리고

(ii)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식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b)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만든 식품

(c) 다음으로 대표되는 식품.

(i) 특수한 의학적 용도를 위한 식품 또는

(ii) 질병,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를 위한 식이 관리용 식품.

(2) 서브섹션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영아용 조제식 제품, 또는

(b) 과체중 및 비만의 식이 관리를 위해 특별히 조제되었으며
*초저열량식품이 아닌 식품.

1.1.2—6 **카페인 조제 음료의 정의**

(1) 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카페인 조제 음료(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는 향미가 있는 무알코올음료, 또는 여기에 기타 물질(예를 들어, 탄수화물(carbohydrates), 아미노산(amino acids), 비타민)을 첨가한 음료로 다음과 같다.

(a) 카페인이 들어 있고,

(b) 정신적 기능 향상의 목적이 있다.

(2) 카페인 조제 음료는 물을 원료로 한 향미 음료로, 섹션 S15-5의 항목 14.1.3 과, 섹션 S18-10 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1.1.2—7 **의료 기관의 정의**

(1) 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의료 기관(medical institution)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a) 급성환자 전문병원
- (b) 호스피스
- (c) 저보호 노인요양시설
- (d) 노인요양원
- (e) 정신병원
- (f) 노인 임시 위탁시설
- (g) 노인 주간 병동
- (h) 화학치료와 신장 투석 서비스를 위한 주간 병동.

(2) 본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급성 환자 전문병원(*acute care hospital*)은:

- (a)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i) 입원 치료 또는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 외과, 산부인과 서비스,
 - (ii) 통합적으로 자격을 갖춘 간호 서비스를 24 시간 제공하고 기타 필요한 전문 서비스,
 환자의 대부분이 급성질환 또는 일시적인 경증질환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평균 입원 기간이 짧다.
- (b)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다.
 - (i) 치과, 안과 전문병원과 기타 전문 내과와 외과 진료 시설
 - (ii) 공공 급성 환자 치료 병원
 - (iii) 민간 급성 환자 치료 병원.

호스피스(*hospice*)는 말기 환자에게 일시적 완화 치료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시설(공공 또는 민간)을 의미한다.

저보호 노인요양시설(*low-care aged care establishment*)은 노인이 독립적으로 주거하지만 필요한 경우 비상 호출 시 음식 제공을 포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요양원(*nursing home for the aged*)은 노인에게 정기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을 위한 시설로 사설 자선단체,

민간 영리 기관,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정신병원(*psychiatric hospital*)은 일차적으로 정신과 장애, 정신질환 또는 행동 장애가 있는 입원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전용 시설(공공 또는 민간)을 의미한다.

노인 임시 위탁시설(*respite care establishment for the aged*)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 관리와 정기적인 기본 간호 서비스를 포함한 단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 주간 병동(*same-day aged care establishment*)은 노인이 주간 또는 하루에 일정 시간 재환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화학치료와 신장 투석 서비스를 위한 주간 병동(*same-day establishment for chemotherapy and renal dialysis services*)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의료 센터 또는 병원으로, 일정 기간에 정해진 간격으로 비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 또는 일정 시간에 화학치료나 신장 투석 서비스 등으로 급성질환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공공 또는 민간), 또는
- (b) 독립된 주간 수술센터로 화학치료 또는 신장 투석 서비스로 급성질환 치료와 검사를 제공하는 병원 시설(공공 또는 민간).

1.1.2—8 신소재 식품의 정의

- (1) 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소재 식품(*novel food*)은 공중 보건과 안전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비전통 식품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

- (a) 인간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 또는
- (b) 식품의 구성 또는 구조, 또는
- (c) 식품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 (d) 식품의 원료, 또는

- (e) 식품 섭취 패턴과 수준, 또는
- (f) 기타 관련 사항.

비전통 식품(non-traditional food)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인간이 섭취한 적이 없는 식품, 또는
- (b) 식품에서 얻은 물질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식품 *성분 외에는 섭취된 적이 없는 물질, 또는
- (c) 그 외의 물질 또는 그 물질이 얻어진 식품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식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물질, 및
- (d) *세포 배양 식품을 포함하지 않음.

(2) 다음 중 어느 것:

- (a)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품이 존재하는 경우
- (b)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제품에 식품이 존재하는 경우
- (c)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 (d)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제품으로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본 섹션의 목적으로 해당 식품과 관련하여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사람이 섭취한 이력이 없다.

1.1.2—9 **영양 함량 강조표시의 정의**

(1) 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영양 함량 강조표시(nutrition content claim)는

- (a) 다음에 관한 강조표시를 의미한다.
 - (i) 다음 성분의 존재 여부를 보여준다.
 - (A) * 생물학적 활성물질
 - (B) * 식이섬유
 - (C) 에너지
 - (D) 무기질
 - (E) 칼륨
 - (F) 단백질

(G) * 탄수화물

(H) ‘지방’

(I) 단백질, 탄수화물 또는 ‘지방’의 구성 성분

(J) *소금

(K) 나트륨

(L) 비타민

(ii) *혈당지수 또는 혈당부하지수

(b) 알코올 함유를 나타내지 않는다.

(c) *건강 강조표시가 아니다.

참고 서브섹션 2.6.2-5 (4)와 2.10.2-8 (3)을 참조한다.

영양정보표에 필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영양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명확히 하자면, 본 규정에서 특정 정보를 영양정보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영양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양정보표에 자발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영양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 (3) 의무는 아니지만 본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영양정보표에 포함될 특정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양 함량 강조표시(nutrition content claim)**에 해당한다.

(a) 본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정보가 다음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i) 해당 식품의 1 회 분량 당 2g 미만의 *식이섬유 함유 또는

(ii) 트랜스지방산(trans fatty acid) 함량 또는

(iii) 유당(lactose) 함량.

- (4)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는 식품의 경우 패러그래프 1.2.8-6 (1) (a),(b),(c)와 서브패러그래프 1.2.8-6 (1) (d)

(i),(ii),(iii)에 언급한 정보를 영양정보표에 기재하는 것은 **영양 함량**

강조표시(nutrition content claim)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명확히 하자면, 섹션 2.7.1-4A 에서 요구하는 열량 표시는 영양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 열량 표시를 자발적으로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영양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이 코드가 섹션 2.7.1-4A 에 언급된 열량을 표시하기 위해 *규정된 음료의 포장 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 층에 해당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영양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10 **권장식이섭취량(RDI)과 안전추정적정 일일섭취량(ESADDI)**

참고 RDI'는 권장식이섭취량의 축약형이다. 'ESADDI'는 안전추정적정 일일섭취량의 축약형이다.

- (1) 영아를 위한 식품과 관련해서 섹션 S1-2 또는 섹션 S1-3 표 1 열에 명시되어 있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 또는 *안전추정적정 일일섭취량(ESADDI)은 5 열에 명시되어 있다.
- (2) 1~3 세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제조되었고 대표되는 식품(유아용 식이 보충용 조제 식품 포함)과 관련 섹션 S1-2 또는 섹션 S1-3 의 표 1 열에 명시한 비타민 또는 무기질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 또는 *안전추정적정 일일섭취량(ESADDI)은 4 열에 명시되어 있다.
- (3) 기타 식품과 관련해서 섹션 S1-2 또는 섹션 S1-3 의 표 1 열에 열거된 비타민 또는 무기질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 또는 *안전추정적정 일일섭취량(ESADDIs)은 3 열에 명시되어 있다.

1.1.2-11 **식품첨가물로 사용(used as a food additive) 등의 정의**

- (1) 본 규정에서, 물질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used as a food additive)**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스케줄 14 에서 제시한 기술적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질을 첨가한 경우이며,
 - (b) 해당 물질은 서브섹션 (2)에 명시되어 있다.

(2) 서브섹션 (1)에 언급한 물질은 다음과 같다.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 (i) 스케줄 15 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 명시되어 있는 물질,
- (ii) *GMP 허용 첨가물,
- (iii) *GMP 허용 착향료,
- (iv) 최대 기준으로 허용된 *착향료,

참고 스케줄 15 에는 GMP 식품으로 허용된 첨가물, GMP 에서 허용한 착향료, 최대 기준으로 허용된 착향료로 스케줄 16 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 명시되어 있다.

(b) 다음과 같은 물질

- (i) *비전통 식품이면서
- (ii) 스케줄 14 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을 한 가지 이상 수행하기 위해서 농축, 정제, 합성된 물질.

기타 정의

(3) 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GMP 허용 첨가물(*additive permitted at GMP*)은 섹션 S16-2 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GMP 허용 착색료(*colouring permitted at GMP*)는 섹션 S16-3 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허용된 착색료의 최대기준(*colouring permitted to a maximum level*)는 섹션 S16-4 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색소와 색소의 알루미늄 및 칼슘 레이크

(4) 스케줄 15 *GMP 허용 착색료 또는 *허용된 착색료의 최대 기준에 명시한 색소에 대한 언급에는 그 색소로 만든 알루미늄 및 칼슘 레이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

1.1.2—12 영양물질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물질은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used as a processing aid)** 물질이다.

- (a) 영양학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용하고
- (b) 해당 물질이 서브섹션 (2)에 명시되어 있다.

(2) 서브섹션 (1)에서 물질은 다음을 나타낸다.

- (a) 본 규정에서 *영양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식별하는 모든 물질,
- (b) 비타민 또는 미네랄,
- (c) 식품에 첨가할 때 영양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축, 정제 또는 합성된 모든 물질(이눌린형 프럭탄, 갈락토올리고당 또는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되는 물질 제외).

Note 영양 물질로의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은 기준

1.3.2(비타민 및 미네랄), 기준 2.9.1(영아용 조제분유), 기준 2.9.2(영아용 식품), 기준 2.9.3(식사 대용 조제식) 표준 2.9.4(조제된 스포츠용 보충제) 및 표준 2.9.5(특수의료용도 식품). (2)(a)에 언급된 물질에는 예를 들면, 섹션 S17-2 및 S17-3(비타민 및 미네랄)의 표와 섹션 S28-2, S29-18 및 S29-19(기타 물질)의 표에서 식별한 물질을 포함한다.

1.1.2—13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 식품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used as a processing aid)** 물질은 가공 과정 중에 사용하는 다음 물질을 의미한다.

- (a) 가공 과정 중에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 (b) 판매용 식품의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 (c) 해당 물질이 서브섹션 (3)에 명시되어 있다.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used as a processing aid) 식품 언급

(2) 본 규정에서, 다른 식품과 관련하여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언급은 다음 식품에 대한 언급이다.

- (i) 서브섹션 (3)에서 명시하지 않은 물질이며,
- (ii) 가공 과정에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식품에 사용하거나 첨가하고
- (iii) 판매용 식품의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b) 또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식품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이다.

참고 1 본 규정은 식품을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서브섹션 (3)에 언급한 물질은 제외).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 식품과 물질에 적용하는 특수표시 요건은 패러그래프 1.2.4-3 (2)(d)와 1.2.4-3 (2)(e), 서브패러그래프 1.2.8-5 (a)(vii)을 참조한다).

참고 2 식품이 다른 식품과 관련하여 가공보조제로 사용되고 그 양이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경우, 해당 초과분은 다른 식품의 가공보조제로 취급하지 않으며, 원료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패러그래프 1.2.4-3 (2)(e)를 참조한다.

(3) 서브섹션 (1)과 (2)에서 언급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a) 스케줄 18 에서 명시한 물질,
- (b) GMP 허용 *첨가물.

참고 ‘GMP 허용 첨가물’은 정의된 용어이다. 섹션 1.1.2-11 를 참조한다.

1.1.2-14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양 계산 및 표시**

- (1) 비타민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과 안전추정적정 일일섭취량(ESADD)은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타민 형태의 총량과 허용된 형태의 비타민으로 섹션 S1-2 표 3.4.5 열에서 규정한 것처럼 계산하여 나타낸 비타민을 의미한다.
- (2) 무기질에 대한 권장식이섭취량(RDI)과 안전추정적정

일일섭취량(ESADDI)은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기질 형태의 총량과 허용된 형태의 무기질로 섹션 S1-3 의 표 1 열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나타낸 비타민을 의미한다.

(3) 다음과 같이 양을 계산할 수 있다.

(a) 비타민 A 의 경우

(i) 레티놀 당량을 단위로 양을 계산한다.

(ii) 비타민 A 의 프로비타민 A 에 대해서는 섹션 S1-4 의 전환계수를 이용하여 레티놀 당량을 계산한다.

(b) 니아신의 경우, 아미노산 트립토판의 전환으로부터 얻은 니아신은 제외한다.

(c) 비타민 E 의 경우, 섹션 S1-5 의 전환계수를 이용하여 알파-토코페롤 당량으로 환산하여 양을 계산한다.

1.1.2—15 승인된 건강별점 기호(Permitted Health Star Rating symbol)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승인된 건강별점 기호(Permitted Health Star Rating symbol)**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a) 호주의 상표번호는 1641445, 1641446 또는 1641447 이고

(b) 뉴질랜드의 상표번호는 1018807, 1018808 또는 1018809 이다.

(2) 명확하게, 서브섹션 (1)에서 언급한 이미지는, 이미지가 다음을 나타낸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된 건강별점 기호는 아니다

(a) 100g 당, 100ml 당 또는 팩(봉지) 당 에너지 또는 영양소 함량

(b) 1 인분 또는 권장량 기준의 에너지 또는 영양소 함량

(c) 0 이상인 에너지 또는 영양소 함량

(d) 일일섭취량에 따른 에너지 함량과 kJ 로 표시한 양.

1.1.2—16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는 다음 식품을 의미한다.

-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
 - (i) *신규 DNA 를 함유한 유기체,
 - (ii) 신규 DNA 를 함유한 유기체로부터 유래한 식품,
 - (iii) 신규 DNA 를 함유한 세포군,
 - (iv) 신규 DNA 를 함유한 세포군으로부터 유래한 식품이고,
 - (b)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i) 식품첨가물로 *사용된 물질,
 - (ii) 가공보조제로 *사용된 물질,
 - (iii) 다음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
 - (A) 세포 배양 과정에서 세포군의 성장 및 생육을 지원하거나,
 - (B) 세포 과정에서 세포군을 가공한다;
 - (iv) 접목된 식물의 일부분에서 유래됐지만, 해당 일부분이 신규 DNA 또는 *신규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
 - (v) 외래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분리 개체로부터 유래한 식품.
- (2) 본 섹션에서 **외래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분리 개체(a null segregant)**는 다음 유기체, 세포 또는 세포군을 의미한다:
- (a) *신규 DNA 를 함유한 유기체, 세포 또는 세포군으로부터 파생되었고,
 - (b) 신규 DNA 를 함유하지 않는다.

1.1.2—17 신규 DNA(*novel DNA*)의 정의

- (1) 본 규정에서, **신규 DNA(*novel DNA*)**는 다음 DNA 를 의미한다.
 - (a) 인위적으로 유기체, 세포 또는 세포군의 유전체에 도입하였고,
 -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i) 교배 가능한 종이 아닌 종으로부터 유래한 DNA,

(ii) 다음 DNA 에 해당한다:

(A) 교배 가능한 종에서 유래하였고,

(B) 패러그래프(1)(a)에서 언급된 도입 이전에
재배열되거나 재조합된 암호화 영역을 포함한다.

(iii) 현존하는 종으로부터 유래한 DNA 가 아니다.

(2) 본 섹션에서 **교배 가능한 종(crossable species)**은

패러그래프(1)(a)에 언급된 유기체, 세포 또는 세포군의 종과
교배되거나 교잡이 가능한 유기체, 세포 또는 세포군의 종을
의미한다.

(3) 서브섹션 (1)과 (2)에도 불구하고, 신규 DNA 는 *Agrobacterium*
매개 형질전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좌측 및 우측 경계 서열을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 유보 및 경과 조항

아래 표는 이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운용, 유보 또는 경과 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식품 기준 (제안 P1039 - 영아용 조제식의 미생물학적 기준) 변경				
해당 법 항목	개정 번호	FRLI 등록 관보	법의 경과 조항	경과 합의 내용
스케줄 항목 [1]과 [2]	163	F2016L00784 2016 년 5 월 12 일 FSC105 2016 년 5 월 19 일	클로즈 4	항목 4에서는 규정 섹션 1.1.1—9가 여러 변경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식품 기준(제안 P1050 - 알코올음료에 대한 임신 경고 표시) 변경				
스케줄 항목 [1]	194	F2020L00952 2020 년 7 월 28 일 FSC 135 2020 년 7 월 31 일	클로즈 4	스케줄의 항목 [1]로 인한 규정 변경사항에 대한 경과 합의 항목 4. 경과 기간은 2020년 7월 31일 시작되며 2023년 7월 31일 종료된다. 서브클로즈 4 (1)은 본 규정의 섹션 1.1.1—9가 위 변경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서브클로즈 4 (2)는 경과 기간에 식품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따르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규정된 변경 없이 시행 중인 본 코드 (b) 규정된 변경에 따라 개정된 본 코드. 서브클로즈 4 (3)은 경과 기간이 끝나기 전에 표시한 식품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따르면 경과 기간 후에 판매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규정된 변경 없이 시행 중인 본 코드 (b) 규정된 변경에 따라 개정된 본 코드.
식품 기준(제안 P1044 - 플레인 잉글리시 알레리그 유발물질 표시) 변경				
스케줄 항목 [2]	197	F2021L00145 2021 년 2 월 24 일 FSC138 2021 년 2 월 25 일	클로즈 4	스케줄의 항목 [2]로 인한 규정 변경사항에 대한 경과 합의 클로즈 4. 경과 시기는 2021 년 2 월 25 일에 시작하여 2024 년 2 월 25 일에 끝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경과 후 시기는 2024 년 2 월 26 일부터 2026 년 2 월 26 일까지의 기간이다. 서브클로즈 4 (1)에서는, 변경사항에는 규정 섹션 1.1.1-9 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서브클로즈 4 (2)에서는 경과 시기에 식품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c) 위의 변경기준 없이 시행 중인 규정 (d) 위의 변경기준으로 개정된 규정. 서브클로즈 4 (3)에서는 경과 시기에 표시를 부착하고 포장을 끝낸 식품 제품이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경과 시기 이후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c) 위의 변경기준 없이 시행 중인 규정 (d) 위의 변경기준으로 개정된 규정.

식품 기준(신청 A1230 - 초저열량식이(VLED) 변경				
스케줄 항목 [1.1]과 [1.2]	208	F2022L00 733 2022 년 6 월 1 일 FSC 148 2022 년 6 월 1 일	클로즈 4	식품 기준(신청 A1230 - 초저열량식이 (VLED)) 변경 클로저 4 는 법률 문서에 스케줄 항목 [1.1] 및 [1.2]에 의해 제정된 코드의 변경에 대한 계도적 준비를 제공함. 서브클로즈 4 (1)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제정된 변경사항에는 규정 섹션 1.1.1-9 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서브클로즈 4 (2)에서는 경과 시기에 식품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a) 법률에 따라 제정된 변경기준 없이 시행 중인 규정; (b)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변경기준으로 개정된 규정. 서브클로저 4(3)은 상기 목적상 계도기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시작하여 시행일로부터 36 개월 후에 완료되는 기간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계도기가 2022 년 6 월 1 일에 시작하여 2025 년 6 월 1 일에 끝나는 기간임을 의미한다.
식품 기준(제안 P1030 - 전해질 음료의 구성 및 표시) 변경				
스케줄 항목 [1]	210	F2022L01 061 2022 년 8 월 12 일	클로즈 4	식품 기준(제안 P1030 - 전해질 음료의 구성 및 표시) 변경 클로저 4 는 법률 문서에 스케줄 항목 [1]에 의해 제정된 코드의

		FSC 150 2022 년 8 월 12 일		변경에 대한 계도적 준비를 제공함. 서브클로즈 4 (1)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제정된 변경사항에는 규정 섹션 1.1.1-9 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서브클로즈 4 (2)에서는 경과 시기에 식품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a) 법률에 따라 제정된 변경기준 없이 시행 중인 규정; (b)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변경기준으로 개정된 규정. 서브클로저 4(3)은 상기 목적상 계도기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시작하여 시행일로부터 24 개월 후에 완료되는 기간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계도기가 2022 년 8 월 12 일에 시작하여 2024 년 8 월 12 일에 끝나는 기간임을 의미한다.
식품 기준 (제안 P1028 - 영양용 조제식 제품 - 결과적 개정) 변경				
스케줄 2 의 항목 [9] 및 [10]	231	F2024L01 151 2024 년 9 월 13 일 FSC 171 2024 년 9 월 13 일	클로즈 4	클러즈 4 는 스케줄 2 의 항목 [9] 및 [10]과 식품 기준 (제안 P1028 - 영양용 조제식 제품 - 결과적 개정) 변경에 의해 제정된 본 코드에 대한 변경 기준에 대한 계도적 준비를 규정한다. 계도 기간은 2024 년 9 월 13 일에 시작하여 2029 년 9 월 13 에

				완료하는 기간임. 서브클러즈 4(1)은 본 코드의 섹션 1.1.1—9가 변경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서브클러즈 4(2)는 계도 기간 동안 식품이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한다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위의 변경사항 없이 시행 중인 본 코드 (b) 위의 변경사항에 따라 개정된 본 코드 서브클러즈 4(3)은 계도 기간 종료 전에 포장되어 표시가 완료된 식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다음을 준수한다면 경과 후 기간에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위의 변경사항 없이 시행 중인 본 코드 (b) 위의 변경사항에 따라 개정된 본 코드
식품 기준 (제안 P1063 - 코드 수정 (2024) - 첨가당 강조표시) 변경				
스케줄의 항목 [1]	233	F2024L01 376 2024년 10월 28일 FSC173 2024년 10월 29일	클러즈 4	클러즈 4는 식품 기준 제안 P1063 - 코드 수정 (2024) - 첨가당 강조표시) 변경의 항목 [1]에 의해 제정된 본 코드에 대한 변경 기준에 대한 계도적 준비를 규정한다. 계도 기간은 2024년 10월 24일에 시작하여 2028년 10월 29에 완료하는 기간임. 후속-계도 기간은 2024년 10월

				30 일에 시작하여 2030 년 10 월 30 에 완료하는 기간임. 서브클러즈 4(1)은 본 코드의 섹션 1.1.1—9 가 변경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서브클러즈 4(2)는 계도 기간 동안 식품이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한다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법률에 따라 제정된 변경 없이 시행 중인 규정; (b)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변경으로 개정된 규정. 서브클러즈 4(3)은 계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포장 및 라벨 표시가 된 식품이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계도 후속-계도 기간 동안 판매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법률에 따라 제정된 변경 없이 시행 중인 규정; (b)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변경으로 개정된 규정.
--	--	--	--	---

개정 이력

개정 이력은 기준에 대한 각 개정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한 효력 발생 또는 중단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달리 명시된 바가 없으면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의 섹션92에 따른다. 개정 내용은 그와 같이 명시하지 않는 한 효력 중단에 대한 특정 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편집본에 관하여

본 문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개정 제249호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기준 1.1.2의 20호 편집본이다. 여기에는 그 날짜까지 편집본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이 발생된 모든 개정 내용을 포함한다.

2026년 4월 30일에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

발효되지 않은 개정 사항 또는 효력이 중지된 조항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효되지 않은 개정 사항 또는 효력이 중단된 조항은 본 기준에 음영 처리되어 해당 발효 또는 중단 날짜와 함께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포함되거나 삭제되어 연방법령등록부(Federal Register of Legislative)에 등록된 편집본에 반영될 것이며 해당 날짜가 지난 후에는 개정 이력에 기재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약자가 아래 표에 사용될 것이다.

ad = 추가 또는 삽입 am = 개정
exp = 만료 또는 효력 중지 rep = 폐지
rs = 폐지 및 대체

기준 1.1.2는 개정안 154(F2015L00385 - 2015년 3월 31일)의 일부로 2015년 4월 10일에 식품 기준 관보 No. FSC96를 발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 등록 관보	시행일 (중단일)	변경 내용	개정에 대한 설명
1.1.2— 2 (3)	157	F2015L013 66 2015년 9월 1일 FSC99 2015년 9월 3일	2016년 3월 1일	ad	새로운 기준 1.2.12 언급. '규정 음료(prescribed beverage)'와 '규정 음료의 글루텐프리 강조표시(prescribed beverage gluten free claim)'에 대한 정의.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 등록 관보	시행일 (중단일)	변경 내용	개정에 대한 설명
1.1.2— 2 (3)	161	F2016L001 15 2016 년 2 월 17 일 FSC103 2016 년 2 월 22 일	2016 년 3 월 1 일	am	견과류와 씨앗에 대한 언급 대상을 ‘식품군(food group)’ 정의에 포함
1.1.2— 2 (3)	161	F2016L001 20 2016 년 2 월 18 일 FSC103 2016 년 2 월 22 일	2016 년 3 월 1 일	am	잘못된 상호 참조를 바로잡기 위한 ‘개별 분량 포장(individual portion pack)’에 대한 정의
1.1.2— 2 (3)	163	F2016L007 84 2016 년 5 월 12 일 FSC105 2016 년 5 월 19 일	2016 년 5 월 19 일	rs	‘SPC’의 정의. 운용, 유보 및 경과 조항은 위의 표 참조
1.1.2— 2 (3)	166	F2017L000 23 2017 년 1 월 5 일 FSC108 2017 년 1 월 12 일	2017 년 1 월 12 일	am	기준 1.2.7 의 잘못된 상호 참조
1.1.2— 2 (3)	168	F2017L004 14 2017 년 4 월 11 일 FSC110 2017 년 4 월 13 일	2017 년 4 월 13 일	am	‘허용된 착향료(permitted flavouring substance)’의 정의에 따라 참조 업데이트.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 등록 관보	시행일 (중단일)	변경 내용	개정에 대한 설명
1.1.2— 3 (2)	159	F2015L019 13 2015 년 12 월 2 일 FSC101 2015 년 12 월 7 일	2016 년 3 월 1 일	ad	‘생살구 알맹이(raw apricot kernel)’의 정의.
1.1.2— 7 (2)	157	F2015L013 74 2015 년 9 월 1 일 FSC99 2015 년 9 월 3 일	2016 년 3 월 1 일	am	‘급성 환자 전문병원(acute care hospital)’의 정의에서 오타 수정.
1.1.2— 9 (1)	172	F2017L011 42 2017 년 9 월 6 일 FSC114 2017 년 9 월 7 일	2017 년 9 월 7 일	am	‘영양 함량 강조표시(nutrition content claim)’의 정의.
1.1.2— 11 (2)(a) 참고	172	F2017L011 42 2017 년 9 월 6 일 FSC114 2017 년 9 월 7 일	2017 년 9 월 7 일	am	‘식품(foods)’ 삭제.
1.1.2— 12	161	F2016L001 20 2016 년 2 월 18 일 FSC103 2016 년 2 월 22 일	2016 년 3 월 1 일	am	참고의 오타.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 등록 관보	시행일 (중단일)	변경 내용	개정에 대한 설명
1.1.2— 15	159	F2015L019 31 2015 년 12 월 3 일 FSC101 2015 년 12 월 7 일	2016 년 3 월 1 일	ad	건강별점 기호와 관련한 섹션.
1.1.2— 2 (3)	182	F2018L015 94 2018 년 11 월 23 일 FSC123 2018 년 11 월 29 일	2018 년 11 월 29 일	am	2015 (27 판) 삭제, 2018 (28 판) 대체
1.1.2— 9 (1)	182	F2018L015 94 2018 년 11 월 23 일 FSC123 2018 년 11 월 29 일	2018 년 11 월 29 일	am	‘지방(fat)’의 오타’
1.1.2— 2 (3)	194	F2020L009 52 2020 년 7 월 28 일 FSC 135 2020 년 7 월 31 일	2020 년 7 월 31 일	ad	‘개별 유닛(individual unit)’, ‘임신 경고 표시(pregnancy warning label)’, ‘임신 경고 픽토그램(pregnancy warning pictogram)’, ‘prescribed alcoholic beverage(규정된 알코올음료)’에 대한 정의. 운용, 유보 및 경과 조항은 위의 표 참조
1.1.2— 2 (3)	197	F2021L001 45 2021 년 2 월 24 일 FSC138 2021 년 2 월 25 일	2021 년 2 월 25 일	ad	‘필수 명칭(required name)’의 정의. 운용, 유보 및 경과 조항은 위의 표 참조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 등록 관보	시행일 (중단일)	변경 내용	개정에 대한 설명
1.1.2— 2 (3)	200	F2021L006 84 2021년 6월 2일 FSC141 2021년 6월 3일	2021 년 6 월 3 일	am	허용된 착향료 정의와 관련한 섹션
1.1.2— 3(2)	200	F2021L006 84 2021년 6월 2일 FSC141 2021년 6월 3일	2021 년 6 월 3 일	ad	밀가루에 대한 정의
1.1.2— 3(2) 참고	206	F2022L003 08 2022년 3월 11일 FSANZ 통보 회보 195-22 (긴급 제안) 2022년 3월 23일	2022 년 3 월 23 일	rs	카바의 정의 폐지 및 대체
1.1.2— 3(2)	208	F2022L00733 2022년 6월 1일 FSC 148 2022년 6월 1일	2022 년 6 월 1 일	ad	초저열량식이 및 초저열량식품 정의 추가 운용, 유보 및 경과 조항은 위의 표 참조
1.1.2— 5(2)	208	F2022L00733 2022년 6월 1일 FSC 148 2022년 6월 1일	2022 년 6 월 1 일	rs	특수의료용도 식품이 아닌 식품의 세부 사항에 대한 폐지 및 대체 운용, 유보 및 경과 조항은 위의 표 참조
1.1.2— 3(2)	210	F2022L01061 2022년 8월 12일 FSC 150 2022년 8월 12일	2022 년 8 월 12 일	am	‘전해질 음료(electrolyte drink)’의 정의. 운용, 유보 및 경과 조항은 위의 표 참조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 등록 관보	시행일 (중단일)	변경 내용	개정에 대한 설명
1.1.2— 2(3)	220	F2023L01004 2023년 7월 11일 FSC 160 2023년 7월 19일	2023 년 7 월 19 일	rs	폐지 및 대체: 허용된 착향 료(<i>permitted flavouring substance</i>)의 정의
1.1.2— 3(2)	229	F2024L00894 2024년 7월 18일 FSC 169 2024년 7월 22일	2024 년 7 월 22 일	ad	토종벌 꿀 정의 추가
1.1.2— 2(3)	231	F2024L01151 2024년 9월 13일 FSC 171 2024년 9월 13일	2024 년 9 월 13 일	ad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제품 과 관련하여 내부 포장의 정의 삽입.
1.1.2— 2(3)	231	F2024L01151 2024년 9월 13일 FSC 171 2024년 9월 13일	2024 년 9 월 13 일	rep	중쇄 중성지방의 정의 폐 지.
1.1.2— 2(3)	231	F2024L01151 2024년 9월 13일 FSC 171 2024년 9월 13일	2024 년 9 월 13 일	rep	단백질 대체제 정의 폐지
1.1.2— 2(3)	231	F2024L01151 2024년 9월 13일 FSC 171 2024년 9월 13일	2024 년 9 월 13 일	rs	경고 문구 정의의 패러그래프 (c) 폐지 및 대체.
1.1.2— 3(2)	231	F2024L01151 2024년 9월 13일 FSC 171 2024년 9월 13일	2024 년 9 월 13 일	ad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제품의 정의 삽입.
1.1.2— 3(2)	231	F2024L01151 2024년 9월 13일 FSC 171 2024년 9월 13일	2024 년 9 월 13 일	rs	성장기용 조제식의 정의 폐지 및 대체.
1.1.2— 3(2)	231	F2024L01151 2024년 9월 13일 FSC 171 2024년 9월 13일	2024 년 9 월 13 일	rs	영아용 조제식 정의 폐지 및 대체.
1.1.2— 3(2)	231	F2024L01151 2024년 9월 13일 FSC 171 2024년 9월 13일	2024 년 9 월 13 일	rs	영아용 조제식 제품의 정의 폐지 및 대체.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 등록 관보	시행일 (중단일)	변경 내용	개정에 대한 설명
1.1.2— 3(2)	231	F2024L01151 2024년9월13일 FSC 171 2024년9월13일	2024 년 9 월 13 일	rep	출산 전(pre-term) 조제식 정의 폐지.
1.1.2— 8(2)	231	F2024L01151 2024년9월13일 FSC 171 2024년9월13일	2024 년 9 월 13 일	rs	신소재식품 정의 폐지 및 대체.
1.1.2— 2(3)	233	F2024L01376 2024년10월28일 FSC173 2024년10월29일	2024 년 10 월 29 일	rs	1.1.2—2(3) 패러그래프 (a) 당류 정의 폐지 및 대체.
1.1.2— 2(3)	233	F2024L01377 2024년10월28일 FSC173 2024년10월29일	2024 년 10 월 29 일	am	1.1.2—2(3) 패러그래프 (a) 당류 정의에 (D-알룰로스 제외)를 포함하도록 개정.
1.1.2—2 (3)	239	F2025L00689 2025년6월18일 FSC179 2025년6월18일	2025 년 6 월 18 일	ad	서브섹션 1.1.2—2(3)에 세포 배양 식품 추가.
1.1.2—8 (1)	239	F2025L00689 2025년6월18일 FSC179 2025년6월18일	2025 년 6 월 18 일	rs	서브섹션 1.1.2—8(1)(c) 폐지 및 비전통식품 정의 1.1.2—8(1)(c)와 (d) 추가.
1.1.2—9	241	F2025L00923 2025년8월12일 FSC180 2025년8월12일	2025 년 8 월 13 일	ad	열량 표시와 관련된 영양 성분 표시에 대한 신규 표시 요건 추가. <i>운용, 유보 및 경과 조항에 대하여는 위의 표 참조.</i>
1.1.2— 2(3)	243	F2025L00988 2025년8월26일 FSC183 2025년9월2일	2025 년 9 월 2 일	rep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식품 및 유전자 기술 정의 폐지.
1.1.2— 2(3)	243	F2025L00988 2025년8월26일 FSC183 2025년9월2일	2025 년 9 월 2 일	ad	유전자 변형 식품, 신규 DNA 및 신규 단백질에 대한 항목 추가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 등록 관보	시행일 (중단일)	변경 내용	개정에 대한 설명
1.1.2- 16	243	F2025L00988 2025년8월26일 FSC183 2025년9월2일	2025 년 9 월 2 일	ad	유전자 변형 식품의 정의에 대한 항목 추가
1.1.2- 16	243	F2025L00988 2025년8월26일 FSC183 2025년9월2일	2025 년 9 월 2 일	ad	신규 DNA 의 정의에 대한 항목 추가
1.1.2- 2(3)	249	F2026L00481 2026년4월30일 FSC 189 2026년4월30일	2026 년 4 월 30 일	rs	서브패러그래프 2(3)(a)(i) 폐지 및 업데이트된 향료·추출 제조업체 협회 출판물의 일자 및 판본으로 대체
1.1.2- 8(2)	249	F2026L00481 2026년4월30일 FSC 189 2026년4월30일	2026 년 4 월 30 일	rs	서브패러그래프 8(2)(d) 폐지 및 정확한 구두법인 글자로 대체